

평택시배드민턴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1. 이 정관은 평택시 체육회 및 경기도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평택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협회는 배드민턴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평택시배드민턴협회"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PYEONGTAEK-CITY BADMINTON ASSOCIATION" (약칭 "PBA") 라 한다.
3. 협회는 경기도 배드민턴협회 및 평택시 체육회 산하 회원단체이다.

제2조(목적 및 지위)

1. 협회는 해당 종목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평택시 위상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협회는 배드민턴을 소관하는 평택시배드민턴협회 등 평택시 체육회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배드민턴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평택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둔다.

제4조(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 가. 배드민턴 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 나. 배드민턴 전국 및 경기도 대회의 개최 및 참가
 - 다.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의 지도와 지원
 - 라. 단위 클럽 가입 및 지도 육성, 시설보호 및 관리 지원

- 마. 각종 대회 개최 및 주관, 소속클럽 산하단체 행사 지원
- 바. 배드민턴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사. 배드민턴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아. 배드민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자. 불우이웃돕기
- 차. 그밖에 배드민턴 진흥 및 협회 정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협회는 산하단체의 요청에 따라 배드민턴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전국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단체 및 회원)

1. 본회는 평택시배드민턴협회 소속 각 클럽을 회원단체로 하고, 그 단체가 평택시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 본회에 등록을 마친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2. 동호인 클럽으로 주소지가 평택시 이거나 또는 직장 동호인으로 직장이 평택시에 있는 직장클럽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조직)

1.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단일 배드민턴 회원단체로 구성한다.
2. 본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다음과 같은 출전 선수부를 둔다.

구 분	학 생 부	청 년 부	준 장 년 부	중 년 부	장 수 부
연령대	10대 (남녀 만 20세 이하)	20대 (남녀 만 20~29세 이하)	30~40대 (남녀 만 30~49세 이하)	50~60대 (남녀 만 50~69세 이하)	70대 이상 (남녀 만 70세 이상)

3. 본회에 다음과 같은 각 부를 둘 수 있다.
 - 가. 여성부

(1)구성 : 본회에 소속된 여성회원

(2)기능 : 여성회원의 활성화 및 자체 경기 등을 통한 회원 간의 상호 친목도모, 각종 경기 및 행사시 지원활동

(3) 회장은 여성부에서 선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청준장년부 (20대~40대)

(1)구성 : 본회에 소속된 청.준장년 회원

(2)기능 : 20~40대 회원의 활성화 및 자체경기 등을 통한 회원 간 상호 친목도모, 각종 경기 및 행사시 지원활동

(3)회장은 청준장년부에서 선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 중년부 (50대 이상)

(1)구성 : 본회에 소속된 중년부(50대 이상) 이상 모든 회원

(2)기능 : 중년부(50대 이상)의 모든 회원의 활성화 및 자체 경기 등을 통한 회원 간의 상호 친목 도모, 각종 경기 및 행사시 지원활동

(3) 회장은 중년부에서 선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도자부

(1)구성 : 본회 산하단체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

(가) 평택시의 모든 코치는 지도자부에 소속되어야 한다.

(나) 협회에 승인 받지 못한 코치는 평택시에서 코치를 할 수 없다.

(다) 각 클럽은 클럽 코치의 선임 및 해임시 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코치는 클럽과 레슨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평택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기능

(가) 배드민턴 기술의 보급 및 자료수집 등 회원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활동

(나)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시범경기 및 경기진행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시 지원활동

(다) 평택시 대표선수로서 전국대회 참가

(3) 회장은 지도자부에서 선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코치는 각 클럽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며 임원 및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4. 본회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가입)

본회의 가입은 본회의 실무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실무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8조(탈퇴)

1. 본회에 가입한 단체의 탈퇴 신청에 의하여, 본회 실무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실무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의결로써 확정한다.
2. 회원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실무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실무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 의결로써 확정한다.
3. 회원 단체가 탈퇴 시에는 본회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징계)

본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회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원 상호간에 불신 조장 및 본회 사업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고 결과를 협회 공문으로 통보한다.

1. 본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단체
2. 본회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 (지도자 포함) 및 단체
3.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3개월, 6개월, 1년), 제명으로 한다.
4. 징계범위
 - 가.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
 - 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다.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라. 대회 등 협회주관 행사간 폭력행위(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상습 집단적 협박 행위 포함)
 - 마. 본회의 업무방해 행위

- 바. 각종 대회에 회원의 급수 및 연령대를 속이는 등 부정 출전하는 행위
 - 사. 기타 집단 또는 개인으로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한 행위를 하거나 본 협회 명예 훼손 행위
5. 대회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위원회에서 현장 발의 및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6. 징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
 -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 (3)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 (4) 각종 단체로부터 징계요구를 이송 받은 경우
 7. 소속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협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협회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위원장 1명(수석부회장), 징계위원 5명(협회임원2,대의원3명), 간사(경기이사)로 구성하며 2/3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9. 징계위원회 개최시 사전 징계대상자의 진술서를 접수하며, 징계위원은 진술서에 대해 사전 충분히 조사후 징계 대상자의 출석을 통보하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는 진술포기서를 제출받아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10. 징계의 집행 : 협회장은 징계 결과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작성 협회공문으로 소속단체에 송부한다.
 11. 재심청구 :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12. 징계대상자의 정보공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평택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 밴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회원 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행사와 사업에 후원 또는 참여한다.
3.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4. 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자체의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일.
5. 임원(회장, 감사)의 선출권 및 피선거권.
6. 건의 및 소청.

제11조(의무)

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단, 회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단체 및 소속 임원에 대하여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일.
2. 임원 선출 및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일.
3. 회원단체 및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회비의 납부
4. 아마추어 규정 준수
5. 단체 및 회원 등록
6.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회의 및 대회에 참석(동참)
7. 지도자부에 소속된 코치를 클럽의 코치로 임명한다.

제4장 대의원 총회

제12조(구성)

본회의 대의원은 제12조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 자문위원, 감사,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실무이사는 제외한다.

제13조(의결사항)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마. 정관의 재·개정 에 관한 사항

샤. 기타 주요한 사항

라. 실무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바. 회원단체 및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제14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다.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라. 감사가 본회의 재산상황과 사업집행에 관하여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 2인이 공동명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항의 "나"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 또는 대의원중 연장자가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4.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전자문서, 협회홈페이지, 밴드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통지된 안건 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정 의결 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불신임)

1.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에는 협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가. 협회의 업무에 불성실하며 반하는 자	나. 협회의 업무를 이용하여 금전적 부적절한 거래를 한 자
다. 소속클럽에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직무중)	
2.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3.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해임안이 의결되면 즉시 해임되며 총회는 즉시 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9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정관"을 준용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사무장, 총무, 재무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나.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라.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중요 사항	

3.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 의 소집)

1.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 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5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밴드 포함)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통지된 안건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정 의결할 수 있다.
4.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 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제2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본 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종대회, 행사포함)

제6장 임 원

제24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 | | |
|-----------------|----------------------|-----------------|-----------------|
| 1. 회장 : 1명 | 2. 고문, 자문위원 : 약간 명 | 3. 명예회장 : 1명 | 4. 수석부회장 : 1명 |
| 5. 상임부회장 : 약간 명 | 6. 부회장(당연직) : 각 클럽회장 | 7. 감사 : 2명 | 8. 전무이사 : 1명 |
| 9. 사무장 : 1명 | 10. 이사(당연직) : 각 클럽총무 | 11. 총무이사 : 1명 | 12. 재무이사 : 1명 |
| 13. 기획이사 : 약간 명 | 14. 전산홍보이사 : 약간 명 | 15. 경기이사 : 약간 명 | 16. 관리이사 : 약간 명 |
| 17. 운영이사 : 약간 명 | 18. 진행이사 : 약간 명 | 19. 의전이사 : 약간 명 | |

제25조(임기)

1. 협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임기 중 유고시 잔여임기가 5개월 미만일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동안 대리 임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 선임직 이사는 4년으로 한다.
3. 임원의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때 회장이 선임하여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 할지라도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5. 감사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 선출)

1. 회장, 감사는 협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전무, 사무장, 총무, 재무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협회장은 클럽회장을 1년 이상 역임했던 회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 가입 후 징계 이상의 징벌없이 활동한 회원이어야 한다.
5. 협회장은 각 클럽의 회장과 겸직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이사회, 대의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고문, 자문 : 회장단에 대한 자문
3. 직전회장 : 회장단의 자문 및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협조
4.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상임부회장,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대내외 행사 등에 참여한다.
6. 전무이사 :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회 대내외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7. 사무장 :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회 대내외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8. 감사

-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자산구입, 손망실처리, 폐처리 등 포함)
 - 나.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하는 일
 - 다.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되지 아니할 때에는 평택시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 라. 제(다)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9. 총무이사 : 사무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업무를 책임지며 다음의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 가. 임원 및 회원명부(4년보존, 이후 전산디지털화 관리)
 - 나. 회칙 및 제규정철(4년보존, 이후 전산디지털화 관리)
 - 다. 공문서철(수,발신, 기안 등, 3년 보존)
 - 라. 각종 회의록(3년 보존)
 - 마. 기록부(4년보존, 이후 전산디지털화 관리)
 - 바. 재산 목록부(4년보존, 이후 전산디지털화 관리)
 - 사. 본회 인장, 협회기 등
 - 아. 지도자부 관리 및 협조
 - 자. 기타
10. 재무이사 : 본회의 회계를 담당하며 다음의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 가. 등록금 및 분담금 수납장(3년보존)
 - 나. 예산서, 결산서 및 각종 사업별, 대회별 결산서(3년보존)
 - 다. 협회명의 예금 통장
 - 마. 기타
11. 기획이사 : 사무국의 전반적인 기획업무를 총괄 하며 조직의 활성화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12. 전산홍보이사 : 사무장을 도와 전산업무와 각종 대회의 경기자료 및 모든 자료의 기록, 보관을 담당하며 본회 및 클럽의 대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와 다음의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 가. 승급자 및 급수조정 명단(3년보존)
 - 나. 대회 성적 및 시상 결과(3년보존)
 - 다. 기타
13. 경기이사 :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경기진행을 담당하며 배드민턴 기술보급 및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배드민턴 운영교실, 회원의 경기력 향상, 각종 대회의 준비 및 심판업무, 대회 운영 및 행사에 관한 제반 업무
14. 관리이사 : 본회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 협회의 구매 자산현황 및 자산 관리, 운영
15. 운영이사 : 본회의 각종 행사에 대한 운영 초괄

16. 진행이사 : 본회 각종 행사의 진행 및 협조 업무
17. 의전이사: 대내외적인 행사 및 각종 대회 의전에 관한 업무
18. 협회의 임원이 협회, 시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 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해당 단체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19.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20. 시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7장 위원회

제28조(설치)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써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29조(고문 및 자문기관)

1. 본회는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역대회장을 역임한 자 및 협회발전에 필요한 자로써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실무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8장 사무국

제30조(사무국)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전무이사, 사무장, 총무이사 1명과 필요한 유급사원을 둘 수 있다.
3. 전무이사, 사무장,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사무국의 기구·조직·직제와 직원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신규가입 클럽의 등록금 : 300,000 원 (가입하는 달의 회비 면제)
2. 클럽 연회비 : 년 600,000원 단 회비납부는 반기 300,000원을 선납한다.

가. 상반기 : 2월 1일 ~ 2월말까지	나. 하반기 : 7월 1일 ~ 7월말까지
------------------------	------------------------
3. 본회 회장은 연 3,000,000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찬조금, 보조금
5. 기타 수입금
6. 지 출
 - 가. 회장단(회장, 전무, 사무장 등 협회 임원)의 섭외활동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일비, 식비, 교통비 등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며,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한다.
 - 나. 협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급사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사원에게는 월 50만원이내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처리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3.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3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재산 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총 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제 34조(물품관리)

1. 본회에 필요한 물품은 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구입한다. 단, 긴급한 업무를 위한 물품은 사전 감사에게 구매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한다.
2. 물품 구입시 본회의 재산에 등록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물품의 용도폐기는 사용년한 및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감사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한다. 단, 망실 시에는 개인 과실을 고려하여 손망실처리위원회(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구성) 회의를 통해 처리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협회장 선거

제36조(협회장 선거일)

1. 협회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 만료일전 30일로 한다.
2.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제1, 2항의 경우 선거일은 사무국에서 정한다.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36조 1, 2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명, 위원2명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 선거인단 구성 (대의원)

3. 대의원 총회 준비 및 투개표 준비

4. 투표와 개표의 관리

5.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는 협회 사무국에서 한다.

제38조(선거의 공고)

회장은 선거일전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각 클럽에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선거 일시 및 장소
2. 개편할 임원
3. 후보자 등록 및 접수 장소
4. 후보자 등록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후보자 등록 및 신청)

1.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본회 사무국에 직접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가. 후보등록 신청서

나. 후보자 등록 추천장(부회장 10인 이상)

다. 이력서

라. 주민등록등본

2.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0시부터 18시로 한다. 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무효처리한다.

제40조(후보자 등록기간)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간(공고일 포함)으로 한다.

제41조(합동 소견발표회)

합동 소견발표회는 당해 임원선거시 1회 개최하며, 후보의 발표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5분이내로 한다.

제42조(참관인 등록)

각 후보는 선거전일 16시까지 사무국에 2인씩의 투개표 과정을 참관할 참관인을 지명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정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 필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당선공고)

사무국은 당선자가 결정되는 즉시 발표하여야 하며 당선 결정후 사무국은 홈페이지, 밴드 및 각 클럽으로 공문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장 대내.외 지원

제44조(경.조사)

본회의 임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10만원 상당의 화환(물품)으로 축.조의를 표할 수 있다.

1. 자녀의 혼사
2.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사망
3. 본인 개업 시(1회)
4. 본회의 임원 이외의 상급단체인 평택시체육회(회장, 사무국장, 총무과장등), 경기도 배드민턴협회(회장, 사무장, 본회 회원인 임원 등)

제45조(표창 및 대회 지원)

1. 본회 주최. 주관하는 행사와 클럽 자체대회, 정기총회 행사시 협회장 표창과 포상
2. 각 시.군 협회(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함)와 클럽 이.취임식 10만원 상당의 축하 화환 지원(연 1회에 한함)
3. 각 클럽 자체 대회시 지원금 및 개인표창 및 포상을 지급하며, 자체대회를 하지 않아도 개인표창과 포상을 한다.(연 1회에 한함)

제12장 보 칙

제45조(이적 및 해산)

1. 본회 소속 회원 단체간 불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된 클럽에서 타클럽으로 이적할 때에는 소속클럽의 회장 동의와 옮기고자 하는 클럽의 회장 승인(이적동의서)이 있어야 하며 소속클럽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후 이적할 수 있다.
2. 등록된 클럽은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는 탈퇴를 막아서는 안 된다.
3. 본회의 설립 목적을 변경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46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재적 임원 과반수이상으로 발의하여 총회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7조(협회기)

1. 본 협회는 협회를 상징하는 기를 보유한다.
2. 협회기는 대한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준한다.
3. 중요 행사 및 대외 출전 시에는 협회기를 계양하여 본회의 위품을 선양한다.

제48조(시행세칙)

실무이사회는 본회의 정관에 관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준용)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 및 평택시 체육회 규정과 일반 통례를 준용한다.

제13장 단체 및 회원등록규정

제50조(등록자격)

회원등록 자격은 동호인 선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한다.

1. 본회에 등록된 단체의 회원으로 한다.(단, 본회에서 승인을 받아 자격을 준다.)
 - 가. 본회에 소속된 클럽 및 전용구장에서 레슨을 하는 자(코치)는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나. 전국배드민턴협회에 선수 등록된 자는 본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협력단체
 - 가. 체육 관련단체 및 직장팀
 - 나. 당해 배드민턴 관련 프로그램보급, 각종대회, 동호인 저변확대에 동참을 희망하는 단체
단, 2항 단체에 대하여는 본회 상임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본회에 단체등록 시 규제사항
 - 가. 동일시간대 동일체육관의 경우 1개 클럽만을 인정한다.
 - 나. 클럽이 분리되어 나가는 경우 분리되어 나가는 회원은 반드시 이적동의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회는 접수 받은 회원에 한하여 회원 자격 유,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회원등록 유효기간)

등록 효력발생은 각 단체에서 발송된 등록서류가 본회 사무국에 접수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제52조(등록절차)

1. 본회에 등록하고자하는 단위클럽 및 협력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입회신청서(단체명, 주소명기) 나. 단체연혁 다. 임원 및 회원명부(30명 이상)
- 라. 단체규약 마. 사업계획서 바. 기타 본회가 요구하는 자료

2. 본회 신규 등록은 다음과 같다.

- 가. 신규단체등록 : 전·후반기 각 1회(1월, 7월) 나. 신규회원등록 : 수시(협회에서는 대회 전전월 말일에 일괄 전산 등록)

3. 등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등록한다.

구 분	10대 남·녀	20대 남·녀	30대 남·녀	40대 남·녀	50대 남·녀	60대 남·녀	70대 남·녀
연 령	만 20세 미만	만20세 ~ 29세	만30세 ~ 39세	만40세 ~ 49세	만50세 ~ 59세	만60세 ~ 69세	만70세이상

제53조(회원의 이동)

본회 산하 단체의 권익보호 및 질서를 위하여 클럽간의 회원이동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은 전 소속 클럽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전 소속 클럽회장과 신규가입 클럽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클럽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회원의 이동이 발생한 클럽회장은 30일 이내에 이동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클럽에서 제명된 회원은 2년 이내에는 본회 소속의 타 클럽에 가입할 수 없다.
(단 제명처분을 내린 단체의 구제 결의된 동의서를 첨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4. 자퇴 및 탈퇴회원이 다른 클럽으로 이동시 전 소속클럽의 동의서가 없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등록할 수 있다.
단, 상별위원회의 의결로 탈퇴된 회원이나 단체는 상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5. 타시도에서 본회로 이적해 올 경우는 단위 클럽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회원으로 등록한다.

6. 신생클럽이 본회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탈퇴 또는 징계가 있는 회원이 있을 때는 등록할 수 없다.

제54조(탈퇴 및 등록취소)

1. 탈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본회에서 탈퇴하게 한다.
 - 가. 회원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한 경우
 - 나. 본회 정관 및 규정의 등록조건을 상실하여 회원단체의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 다.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회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허위로 작성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55조(탈퇴원 서류)

1. 탈퇴원서
2. 탈퇴사유서

제56조(심의절차)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심의 절차는 정관 제7조, 8조 및 제51조에 의한다.

제57조(회비 및 출전비)

1. 본회에 등록된 단체는 분담금 300,000원을 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출전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가. 출전비 : 15,000원 ~ 20,000원
 - 나. 본회 가입비(전산등록)는 5,000원으로 한다.
3. 무자격자가 납부한 회비 및 출전비는 일체 반환치 않는다.

제58조(사전보고)

1. 본회에 등록된 단체가 본회 및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이외의 대회에 출전코자 할 때에는 본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장 협회운영 보안관리

제59조(협회운영 인원, 문서 보안관리)

1. 협회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는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협회사무실)에 보관관리(제27조 8~10항기준) 한다.

2. 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시 발행된 문건은 관련자(대의원,임원) 회람후 파기 및 회수 처리하여 대외 유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회의록에 명시된 내용 및 인적사항 등을 관련이 없는 인원 또는 기관으로 유출시 제2장 9조(징계)에 의거하여 처리 한다.

제15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운영 및 관리

제60조(배드민턴 전용구장 운영 및 관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운영은 본 협회(협회장)에서 관리 및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관리규정을 결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평택시 체육회가 개정한 정관 준칙에 의거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이 정관은 2017. 01. 11부터 개정 시행한다.